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26 선고 2016가합103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17. 7. 12.

판결 선고2017. 7.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에게,

1)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6. 6. 28. 접수 제649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1994. 12. 31. 접수 제1060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99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C는 1994년경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1994. 12. 21. 피고 D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1994. 12. 26. 중도금 100,000,000원, 1994. 12. 28. 잔금 90,000,000원을 각 균분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4. 12.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중간생략의 주문 제1의 가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6. 6.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인 피고 B에게 2016.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었다.

바.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각 1/2 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위 증여계약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의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주문 제1의 가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199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재판장판사최병률

판사조아라

판사김병훈

별지